
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	16,706.1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03.02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2) 및 관악구 주택과(☎02-879-632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52호
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같은 고시 제2015-99호(2015.4.16.) 및 제2019-158호(2019.5.23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(변경)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

1. 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일몰기한	비 고
당 초	상봉9재정비촉진 구역	중랑구 상봉동 83-1번지 일대 (상봉터미널 부지)	28,526.6	2015.4.16.	2020.4.15.	2년 연장
변 경					2022.4.15.	
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7), 중랑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094-21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